

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방송통신위원회

법 제 처 심 사 전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”를 “전체발행부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”를 “총가구”로, “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 중”를 “유료구독 가구 수 중”으로, “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”를 “유료구독 가구 수가”로, “산정한다”를 “산정하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소유제한의 범위 등) ② (생략) 1. <u>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. 유가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,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판매부수로 구분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소유제한의 범위 등)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 <u>전체발행부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「통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·발표하는 <u>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<u>총가구</u> ----- ----- <u>유</u> <u>료구독 가구 수 중</u> ----- ----- <u>유료구독 가구</u> <u>수가</u> ----- ----- <u>산정하며, 방송통신위원회</u> <u>는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 또는 단</u> <u>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</u> <u>하여 지정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465